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해당 건설기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4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2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20만원)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이천시장

4. 건설기계 검사란					5. 등록사항 변경란			
구분	검사일	유효기간 (까지)	검사기관	담당자 성명	연번	변경일자	변경사항	확인
신규등록일 :2019-10-28								
신규(검사)	2019-10-24	2022-10-27	안전관리원경기본검사소	김성호				
정기검사	2022.10.25	2023.10.27	강원영서	김동현				
"	2023.10.17	2024.10.27	대구본검사소	이정빈				
정기	24.10.02	25.10.27	강원영서	김주영				
※ 주의사항 : 첫번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기재합니다.								